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여 과거 기사를 수정 및 삭제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종이신문에 실린 글은 수정이나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실린 글을 전자적 정보로 인정하여 수정, 삭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형실효법상의 과잉처벌 금지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간의 비교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과거의 피의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형기를 마친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면이나 복권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의 효과는 무의미해지며 동시에 행복추구권도 적용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 무한한 접근의 자유를 누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¹⁴⁾

4. 인터넷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언론 분쟁은 이제 더욱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고 조화롭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피해구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반론권 제도 적용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⁵⁾

1) 반론권 적용의 요건

인터넷 신문이 종래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의 대

14)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권리의 개념화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재진과 구분권(2008)은 프라이버시의 확장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이 개념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엽의 경우에는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충분했으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사화 되지 않고 기사화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수정이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인 '잊혀질 권리'가 개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또한 H. Kato 등이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권의 일부인 'right not be communicated' 개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인의 정보가 타인들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소통되지 않도록 할 권리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유일상(2007).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15)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현재 유럽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Lee, 2008). 각 국은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인터넷 반론권 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미네소타대 실하연구소(Shilha Institute, 2003)에서 유럽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볼 수 있듯,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터넷 운영자는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필자에게 수정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로여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한다면 표현행위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흐름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상이 된 것은 2005.1.27. 제정·공포되고 2005.7.28.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다.¹⁶⁾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신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¹⁷⁾ 이에 따르면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만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이나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¹⁸⁾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제14조 제2항),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하지 않는다(제2조).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3항), 피해자는 반론권 청구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6조). 만일 언론사가 피해자와 반론보도에 합의하게 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터넷신문의 반론권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신문·방송과 유사하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기존의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에 단순히 인터넷신문을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절차나 적용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대로 반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 반론권 조정 신청 및 문제점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47건이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 건수가 2007년 1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잡지, 뉴스통신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

16)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언론기본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규정된 ‘중재’는 실제로는 ‘조정’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중재’는 ‘고유한 의미의 중재’와 ‘조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7)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황용석·강원(2001). 『언론사 닷컴: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163~169.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뉴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많다. 또 뉴스의 주제가 제한적이지만 심층적인 경우가 많다.

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무엇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에 있어 2007년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38.9%, 피해구제율은 65.0%로 전체 매체의 피해구제율 64.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2007년도 합의 44건 중 반론보도문 게재를 전제로 한 것은 30건이다.

<표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 결과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2005	48	15		2		13			6	12	(10)		59.5
2006	77	34		2		13		5		23	(18)		72.2
2007	113	44				22		5	5	37	(23)		65.0
계	238	93		4		48		10	11	72	(51)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조정신청인 별로 분류했을 때 일반인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과 단체가 각각 16건, 공인 9건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청인들은 부읍장, 하위직 경찰관, 영화감독, 교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나 정부가 신청한 경우에 국회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3건, 정부기관 1건 등으로 나타나 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매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반론권을 남용한다는 지적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다. 기각 또는 각하된 10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6건), 인터넷신문이 아니어서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2건), 보도 내용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경우(2건) 등이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성립된 것은 30건으로,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게재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19) 피해구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조정성립**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양 당사자 이의 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 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 건수를 각각 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 건수로 나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에 **조정성립된** 30건 중 13~24시간이 1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24시간 초과~48시간 이하 3건, 48시간 초과~72시간미만 4건, 72시간 초과 3건, 12시간 이하 1건으로 집계됐다. 1개월 동안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도 1건 있었다. 게재 날짜만 지정하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시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1건이 있다.

둘째, 게재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의 경우 원래 기사가 게재된 곳에 반론문을 실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에서 몇 번째 꼭지에 반론문을 보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연구결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 19건이다. 단순히 초기화면에 게재하기로 **조정성립된** 8건을 합치면, 모두 27건의 반론보도문이 초기화면에 게재된 것이다. 나머지 3건은 게재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 기사가 초기화면이 아닌, 하위 메뉴에 배치된 것과 상관없이 초기 화면에 반론문을 게재하기로 **조정성립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 당사자가 함께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가 11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이다.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냐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이다. 반론보도문의 그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석 결과 **조정성립**에 이른 30건 가운데 300자 이상의 보도문이 게재된 것은 3건이며, 이 중 가장 긴 것은 740자에 이른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소송과 관련해 반론(정정)보도문 판결 40건을 분석한 결과 글자 수가 300자 이하가 25.0%이며, 301~400자가 42.5%, 401~500자가 12.5%로 나타났다.²⁰⁾ 이는 인터넷신문

이 기사를 게재할 공간적 제약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덜하다는 점에서 장문의 보도문이 게재될 여지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문이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에 게재된 반론(정정)보도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사 삭제 요청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30건 가운데 10건이 삭제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 1건은 다른 요구사항 없이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또 4건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이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 중재부를 두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 쟁점은 기존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점차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언론관련 법제는 언론사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언론사가 생산하고 유통한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의 특징인 보도의 광범위성,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주요 정보 생산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으나, 현재는 개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처럼 단지 정보를 매개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매체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핵

20) 언론중재위원회(2008).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57쪽.